

행복은 키우고 희망은 더하는 규제개선

창조경제 디디도 미래 규제개선 모음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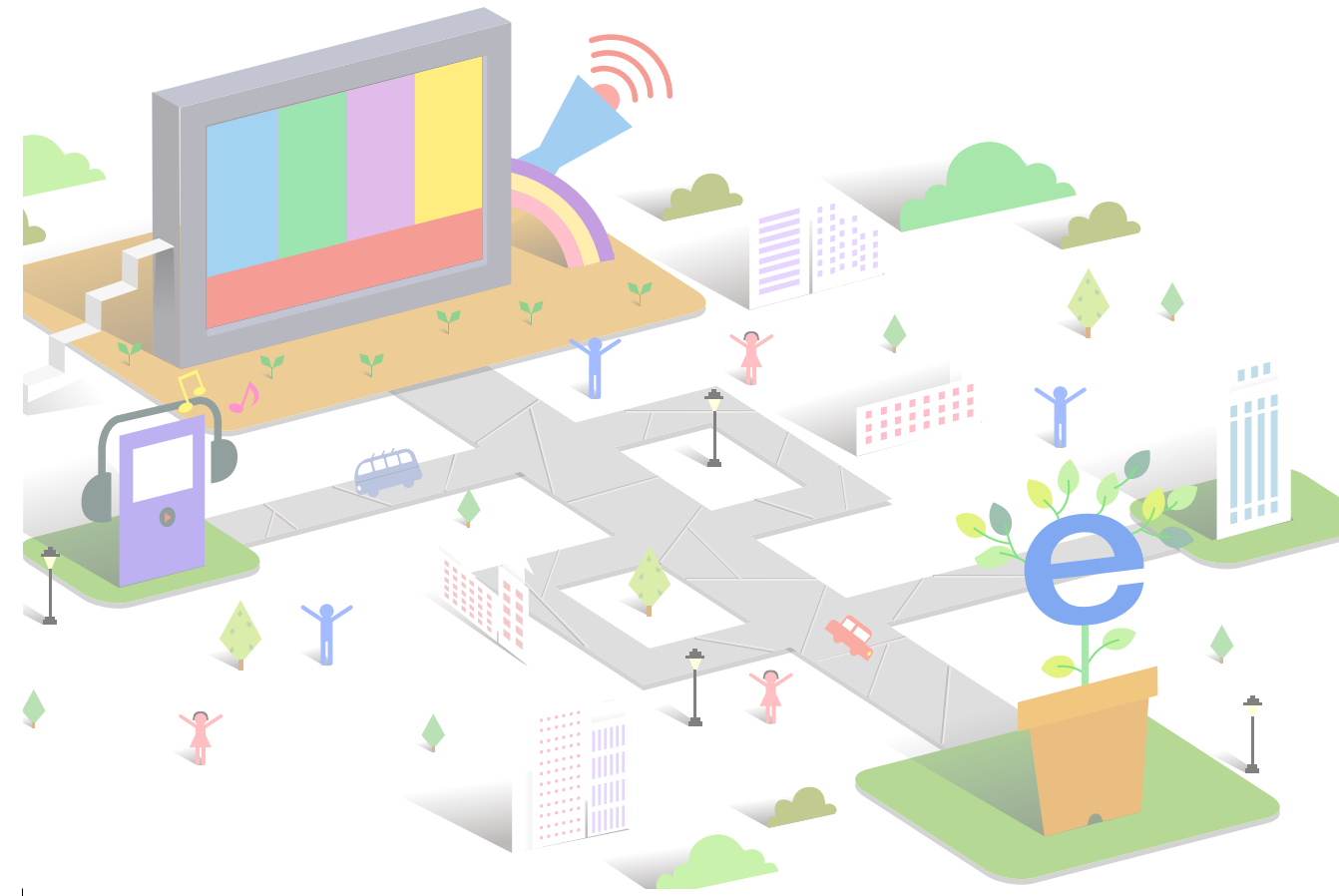
행복은 키우고 희망은 더하는 규제개선

창조경제 디디도 미래 규제개선 모음집

발행일 2013년 12월 17일
펴낸곳 미래창조과학부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4동 규제개혁 법무 담당관
전화 02-2110-2648
팩스 02-2110-2153

※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미래창조과학부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획·디자인 커런트코리아 www.currentkorea.co.kr (02-3210-2770)



도입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규제 현황

1

과학기술

01	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기준 완화	12
02	두꺼운 연구장비 사용벽을 허물다	14
03	과학기술진흥기금 여유자금 운용,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	16

2

방송

04	IIPTV에서도 언제나 공익채널 시청	20
05	IPTV 콘텐츠사업자 외국인 지분규제가 완화	22
06	유료방송 요금신고제 도입! 상품 출시 준비기간 단축	24
07	해외 방송프로그램 재송신 범위 확대	26
08	방송사업간 기술결합 서비스 활성화	28
09	확 낮춘 전송망사업 진입문턱	30
10	위성방송의 역내 재송신 승인요건 완화	32
11	IPTV 방송제공사업, 유효기간 완화	34
12	IPTV 방송채널사용사업 이중규제 해소	36

3

정보통신

13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 한눈에!	40
14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범위를 명확하게	42
15	저렴해진 정보통신공사업의 기업진단 비용	44

4

통신

16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 이제 가입시 선택	50
17	분실 또는 도난 신고된 휴대전화의 불법 사용 차단 강화	52
18	알뜰폰도 LTE서비스 등 부가서비스 개시	54
19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와이브로 이용요금 30% 감면	56
20	인터넷보다 정확한 114 상세주소안내서비스	58
21	별정통신사업, 허가완화로 국민 편의 제고	60
22	국제로밍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62
23	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의무 면제 항목 확대	64

5

전파

24	전파인증! 쉽고 빠르게 개선	72
----	-----------------	----

6

우정사업

25	국제특급, 요금중량 세분화	76
26	우체국 보험금 청구, 간편하게 개선	78

현황

2013년 규제개선종합계획(미래부 소관)	82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애로 개선(손톱 밀 가시뽑기)	83
네거티브 규제방식 전환 확대 추진	84

참고

행정규제란 무엇인가요?	94
규제개선 왜 필요할까요?	95
2013년 규제개선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96
국민행복을 위한 규제개선 언제나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98

국민행복의 시작, 규제개선에서 시작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 규제개선 현황

미래창조과학부는 소관법률 62개, 등록규제 567개, 일몰규제 118개 등 국민의 불편함을 덜고 기업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과감한 규제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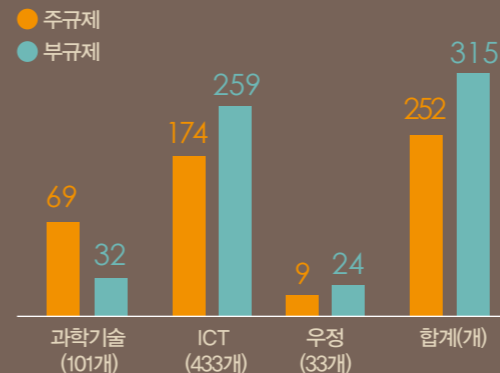
소관 법률 : 62개

- 과학기술 : 과학기술기본법, 우주개발진흥법, 이공계지원특별법 등 36개
- ICT :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ICT 진흥특별법 등 18개
- 우정 : 우편법, 우체국예금·보험법 등 8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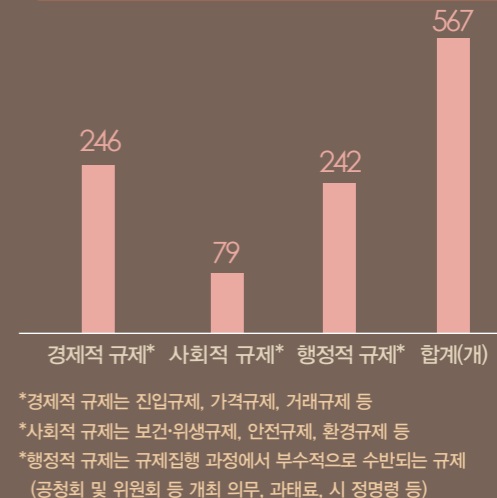
등록 규제 : 567개

미래부 소관 규제는 주규제 252개, 부수규제 315개 등 총 567개
 주규제 :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를 명시한 기본 규제
 부수규제 : 주규제를 부과하기 위한 사전절차적·사후보완적 규제

분야별 규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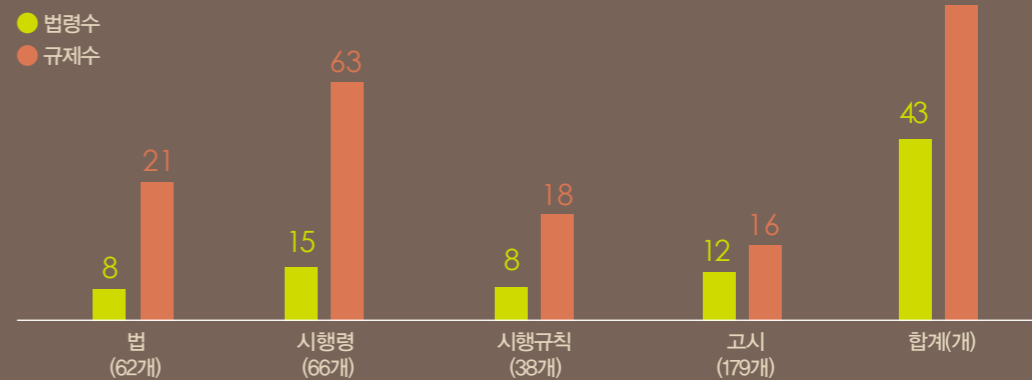


유형별 규제 현황



일몰 규제 : 118개

재검토형 일몰규제를 포함하는 법령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



*효력상실형 일몰규제 : 2건 제외(시행령 1건, 고시 1건) ('13년 11월말 현재)

1

과학기술

- 01 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기준 완화
- 02 공공기관 연구시설·장비 공동이용 조건 완화
- 03 과학기술진흥기금 여유자금 운용,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



01

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기준 완화

Q

독립된 연구공간을 확보하지 못하였는데, 우리 같은 소기업도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나요?



A 연구공간 및 연구전담요원 확보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연구소 설립이 훨씬 쉬워졌어요!

- 칸막이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시 연구공간으로 인정 (30제곱미터 이내)
- 창업 3년 이내인 경우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확보시 인정 (3년 경과시 3명 이상)

소기업 연구소 설립기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개선전

연구공간

소기업의 경우 30제곱미터 이내의 연구공간은 소프트웨어개발공급업 등 11개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업종에 한하여 칸막이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시 연구공간으로 인정

연구전담요원

소기업은 3명 이상 확보

개선후

연구공간

소기업의 경우 30제곱미터 이내의 연구공간은 11개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업종을 포함하여 모든 제조업 분야에 대해 칸막이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시 연구공간으로 인정

연구전담요원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인 소기업의 경우 2명 이상 확보. 단, 창업일로부터 3년 경과시 3명 이상 확보



생생토크, 현장의 목소리

연구공간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도 의류제조 소기업체에서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소 공간을 고정벽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하여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 여간 불편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법령이 개정되어 소규모의 연구공간에 대해서는 칸막이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시 연구공간으로 인정을 받게 되어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아울러 부서간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게 되어 기쁩니다.

소기업체 사장(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연구전담요원

창업 초기의 소기업체 사장으로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 인정을 받으려고 알아보니 연구전담요원을 3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여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에는 2명 이상만 확보하여도 연구소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소기업체 사장(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공동체지원과 (02-2110-2481)

02

공공기관 연구시설·장비 공동이용 조건 완화

Q

회사사정상 연구시설·장비가
턱없이 부족해요.
어쩌죠?



A 이제 공공기관 연구시설·장비!
함께 사용할 수 있어요

공공기관의 연구시설·장비 이용시 해당 기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적극 협조

부족한 연구시설·장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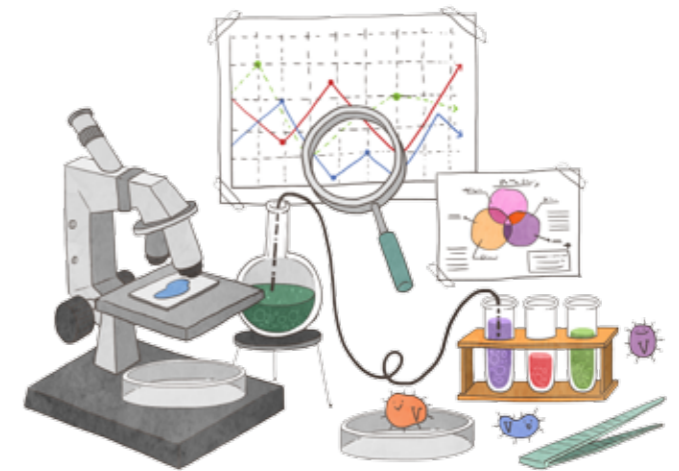


개선전

국가기관 등의 경비지원을 받는 연구기관은 자신이 보유한 연구개발시설 또는 기자재를 타기관이 이용시 실비의 사용료를 받는 조건하에서 허락하도록 의무화

개선후

공공기관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 이용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적극 협조하도록 공동이용 허용의무를 완화



생생토크, 현장의 목소리

경남 창원에 있는 기계부품관련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사장입니다. 가까운 곳에 연구소가 있어 관련 장비 사용과 자료 분석 등을 자주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장비를 사용하려면 연구소에 사용허가 받기도 힘들고, 실비 사용료도 지불하는 등 절차도 복잡하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시간이 돈이라 절차를 밟아 기다리는 시간이 아까웠고, 꼭 필요한 사용료이지만 좀 아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사전에 연구소와 약속만 되면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저희 같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너무 기쁘고 감사하죠. 분석이 빨리 나오면 기술개발 및 사업화까지 시간이 단축되니 매출이 증가할 수도 있잖아요. 인근에 있는 업체에 많이 알려주어야겠습니다.

중소기업 사장(경남 창원시)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공동체지원과 (02-2110-2471)

03

과학기술진흥기금 여유자금 운용,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

Q

모든 금융기관이
과학기술진흥기금
여유자금을 운용하면
뭐가 좋은거죠?



A 안정적이고 투명한 운용을 통해 대한민국 과학
기술에 투자가 늘어납니다

과학기술진흥기금 여유자금, 균등한 투자, 효율적 운용을 위해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

과학기술진흥기금 여유자금 운용!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개선전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여유자금을 안정적이고 투명한 운용을 위해 여유자금의 운용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일부 금융기관으로 제한

개선후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여유자금을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하면서도 사회 저변의 투자가 골고루 이루어 지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



생생토크, 현장의 목소리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안정적이고 투명한 운용을 위해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을 은행 등 일부 금융기관으로 제한하여 지정·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규제 개선을 통해 앞으로는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여유자금을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면서도 사회 저변의 투자가 골고루 이루어지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모든 금융기관에 예치 등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여유자금을 안정적이면서도 다양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소기업체 사장(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정책과 (02-2110-2523)

2



방송

- 04 IPTV에서도 언제나 공익채널 시청
- 05 비실시간 IPTV 콘텐츠사업자 외국인 지분규제가 완화
- 06 유료방송 요금신고제 도입! 상품 출시 준비기간 단축
- 07 해외 방송프로그램 재송신 범위 확대
- 08 방송사업간 기술결합 서비스 활성화
- 09 확 낮춘 전송망사업 진입문턱
- 10 위성방송의 역내 재송신 승인요건 완화
- 11 IPTV 방송제공사업, 유효기간 완화
- 12 IPTV 방송채널사용사업 이종규제 해소

04

IPTV에서도 언제나
공익채널 시청

Q

공익채널,
IPTV에서는
볼 수 없나요?



A 이제는 케이블TV · 위성방송 · IPTV 모두 다
공익채널을 만날 수 있습니다

IPTV에서도 공익채널 의무적으로 운용

공익채널 의무운용!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개선전

종합유선 · 위성방송사업자는 공익채널 방송분야당 1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운용하여야 함
(IPTV 방송 제공사업자 제외)

개선후 (2014년 중 예상, 현재 국회 계류중)

종합유선 · 위성방송사업자 뿐만 아니라 IPTV 방송 제공사업자도 공익채널 방송분야당 1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운용하여야 함



생생토크, 현장의 목소리

다년간 공익채널로 선정되어온 방송사업자입니다. 케이블TV와 위성방송에서는 공익채널을 의무적으로 운용해야하기 때문에 무리없이 많은 시청자들에게 우리 채널을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료방송가입자 중 IPTV를 통해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도 IPTV에서는 공익채널을 의무적으로 운용해야한다는 조항이 없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유료방송의 공익성 제고를 위한 공익채널의 필요성은 케이블TV · 위성방송 · IPTV가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있다는 점이 이상하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IPTV에서도 공익채널을 의무적으로 운용한다니 유료방송이 보다 다양해지고 품격이 높아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회사원(공익채널 종사자)

미래창조과학부 뉴미디어정책과 (02-2110-1885)

05

비실시간 IPTV 콘텐츠사업자 외국인 지분규제 완화

Q

비실시간 인터넷 멀티미디어
콘텐츠 사업도 외국자본
투자유치가 어렵나요?



A

아닙니다! 이제는 100% 외국자본도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외국의 정부나 단체, 외국인 등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제한 폐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콘텐츠 사업 외국자본투자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개선전

외국의 정부나 단체, 외국인 등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총 발행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하도록 함

개선후(2014년 중 예상, 현재 국회 계류중)

부가통신사업자로서 비실시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를 제공하는 콘텐츠사업자에 대해
외국의 정부나 단체, 외국인 등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제한을 폐지함

- 외국인의 비실시간 콘텐츠사업 투자 여건이 조성됨
-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국내 기업의 비실시간 콘텐츠사업 진출이 가능함



생생토크, 현장의 목소리

그 동안 한국의 IPTV 방송을 통해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지분을 투자할 수 없어서 투자를 망설여 왔는데 한국 정부가 100% 지분 참여가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한다고 하니 환영합니다. 내년부터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한국의 IPTV 방송 콘텐츠사업에 대해 투자를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방송사업 투자자)

우리 회사의 외국인 지분이 100분의 49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IPTV 방송 콘텐츠사업에 참여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우리 기업의 콘텐츠를 비실시간 부가통신서비스 형식으로 IPTV에 공급할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업 활성화 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 유치 등에 필요한 조치로서 향후에도 정부에서 기업 규제 개선에 더욱 많은 정책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사원(외국인 지분 49% 이상 국내기업 종사자)

미래창조과학부 방송산업정책과 (02-2110-1868)

06

유료방송 요금신고제 도입!
상품 출시 준비기간 단축

Q

당장 VOD 출시해야
수익이 나는데, 승인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하나요?



A VOD, 데이터 서비스 등 시청자 선택형 방송서비스는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했습니다

시청자 선택형 방송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

시청자 선택형 방송 서비스!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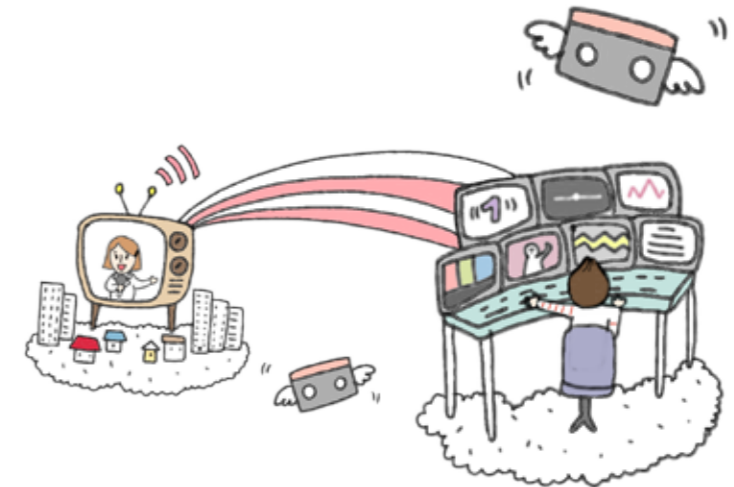


개선전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등이 제공하는 모든 유료방송 상품의 이용요금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개선후(2014년 중 예상, 현재 국회 계류중)

유료방송 상품 중 VOD, 데이터방송 등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시청자 선택형
방송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하여 행정처리 소요기간을 단축(30일→7일)



생생토크, 현장의 목소리

유료방송 상품 출시 이전에 이용요금 승인을 받기 위한 기간이 한달 이상 소요되어 적기에 상품
을 출시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제 VOD와 같은 선택형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요금 승인을 받지
않고 신고만 하면 된다고 하니, 유료방송사업자는 가입자가 원하는 상품을 신속하게 출시하고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료방송사업자(서울 용산구 이촌동)

미래창조과학부 뉴미디어정책과 (02-2110-1882)

07

해외 방송프로그램 재송신 범위 확대

Q

외국의
다양한 프로그램,
더 많이 볼 수 없을까요?



A 앞으로는 유선이나 위성방송으로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외국방송사업자의 방송 재송신할 수 있는 범위 30/100 이내로 완화

해외 방송프로그램 시청!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개선전

종합유선· 위성방송사업자는 외국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운영하는 채널의 20/100 이내에서 재송신할 수 있음

개선후

외국인의 거주비율 등을 고려하여 미래부장관이 고시하는 방송구역에 대해서는 외국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재송신할 수 있는 범위를 30/100 이내로 완화



생생토크, 현장의 목소리

멀리 타국에서 한국으로 일하러 와 고향소식이 항상 궁금하곤 했습니다. 타향살이에 울적한 마음을 달래고자 텔레비전을 봐도 잘 모르는 한국 방송들에서 위로받지 못했는데요. 우연히 예전에 즐겨보던 모국 방송을 한국에서도 방송된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지만, 제가 가입한 케이블TV에서는 그 채널이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더군요. 그런데 이제 외국방송 재송신 채널 수가 확대되어 제가 보고싶던 모국 방송채널도 볼 수 있게 되다니 정말 행복합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이 소식을 꼭 전해주고 싶네요.

외국인 근로자(경기도 안산시)

미래창조과학부 방송산업정책과 (02-2110-1868)

08

방송사업간 기술결합 서비스 활성화

Q

다양한 방법으로 방송을
전송하면 효율성이
높을텐데... 방법이 없나요?



A 방송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전송 수단이
다양해져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방송사업별 기술방식을 혼합 사용하여 창의적 사업환경 조성

방송사업별 기술방식 제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개선전

현행 방송법 체계에서는 방송사업별 기술방식에 따른 역할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어 새로운 유형의 기술결합서비스는 시행이 불가함

개선후(2014년 중 예상, 현재 국회 계류중)

방송법을 개정하여 방송사업별 기술방식을 혼합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

- 방송사업자의 창의적 사업환경 조성 및 경쟁활성화가 기대됨
- 시청자의 매체 선택권 확대가 기대됨



생생토크, 현장의 목소리

방송 기술이 발전하고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촉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송시장에 도입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방송사업자의 기술결합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니 대단히 환영할 일입니다. 하루 빨리 입법절차가 완료되어 진일보 한 융합기술이 방송 서비스에 도입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원(유료방송사업 종사자)

특정 유료방송 매체를 시청하고 싶어 신청을 하고자 했더니 우리 집이 있는 지역은 아직 서비스를 위한 망이 갖춰져 있지 못하여 서비스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부에 문의했더니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 유료방송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전송 수단이 다양해 질 수 있어 우리 집에서 원하는 유료방송 매체를 시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더군요. 하루 빨리 법률이 개정되어 시청자의 방송매체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주부(강원도 속초시)

미래창조과학부 뉴미디어정책과 (02-2110-1885)

09

확 낮춘 전송망사업 진입문턱

Q

전송망 사업자 등록이
까다로워 진입장벽이 높아요!



A 걱정마세요! 최소한의 요건만 충족되면
모두 허용합니다

최소한의 요건만 충족하면 전송망사업 허용

전송망사업 등록제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개선전

전송망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을 할 경우 미래부장관은 관련 법령이 정한 등록요건 위배 여부 등을 검토하여 등록을 허용

개선후(2014년 중 예상, 현재 국회 계류중)

전송망사업의 등록이 금지되는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체계 도입



생생토크, 현장의 목소리

방송프로그램을 종합유선방송국으로부터 시청자에게 전송하기 위해 유·무선 전송·선로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전송망사업으로 창업을 시작해보려고 했더니, 자금이나 인력 등에 대한 등록요건이 방송법 등 관련 법령에 까다롭게 규정되어 있더군요. 등록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어 망설여졌는데, 이제는 법이 바뀌어 전송망사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니 한결 걱정을 덜었습니다. 어서 빨리 전송망사업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예비창업인(서울 강동구 암사동)

미래창조과학부 뉴미디어정책과 (02-2110-1884)

10

위성방송의 역내 재송신 승인요건 완화

Q

위성방송 사업자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승인, 형평성에 맞게 개선할 수 없나요?



A

위성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승인제를 완화했습니다.

위성방송사업자가 지상파방송의 방송구역 외에서 동시 재송신하는 경우에만 승인

위성방송 재송신 규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개선전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구역 외 지상파방송 방송구역 외 재송신의 경우에만 승인 대상임에 반해, 위성방송사업자는 지상파방송 방송구역 내·외 재송신 모두 승인 대상임

개선후(2014년 중 예상, 현재 국회 계류중)

유료방송사업자간 규제형평성을 고려하여 위성방송사업자가 지상파방송의 방송구역 외에서 동시 재송신하는 경우에만 승인받도록 규제 완화



생생토크, 현장의 목소리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달리 위성방송사업자는 지상파방송을 해당 지상파방송구역 내에서 재송신하는 경우에도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어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위성방송도 기술개발로 인해 방송구역별 지상파 재송신이 가능한데 아직 법은 이를 반영하지 못해 안타까웠습니다. 이러한 방송사업자간 규제 불균형이 하루 빨리 해소되기를 기대했는데 드디어 위성방송사업자도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동일하게 승인받지 않도록 개정되었다니 정말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위성방송사업자(서울 마포구 공덕동)

미래창조과학부 뉴미디어정책과 (02-2110-1881)

11

IPTV 방송제공사업,
유효기간 완화

Q

종합유선방송사업자보다
IPTV사업자 허가 기간이
짧은 건 불공평하지 않나요?



A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IPTV 사업자도
허가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허가 유효기간 7년으로 완화

IPTV 사업 유효기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개선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 유효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개선후(2014년 중 예상, 현재 국회 계류중)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7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제 완화함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와 규제 형평성이 확보됨
- 건전한 사업자들의 사업역량 집중 환경이 조성됨



생생토크, 현장의 목소리

2008년 9월, IPTV 방송 제공사업자로서 허가를 받은 이후로 5년이 경과한 올해 재허가를 받았는데요. 재허가 심사 준비과정에서 많은 인력이 투입되었습니다. 정부에서 허가 유효기간을 7년으로 연장하고자 법률 개정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에 사업자의 한 사람으로서 규제완화에 만족감을 느낍니다. 물론 사업 기간 중 문제가 있었거나 향후 사업을 영위하는데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건전하고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해온 사업자에 대해서는 7년의 재허가 기간을 부여하여,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속히 IPTV법 개정이 완료 되길 바랍니다.

회사원(IPTV 방송 제공사업 종사자)

미래창조과학부 뉴미디어정책과 (02-2110-1885)

12

IPTV 방송채널사용사업 이중규제 해소

Q

방송콘텐츠를 IPTV에
송출하고 싶은데 또 등록이
필요한가요?



A 아닙니다, 이제는 별도의
등록절차가 없어졌습니다

방송법 등에 등록된 사업자는 별도 진입절차가 없음

IPTV 송출서비스 등록!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개선전

방송사업자, 통신사업자 등이 IPTV에 동일한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IPTV법에 따른 승인·등록·신고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함

개선후(2014년 중 예상, 현재 국회 계류중)

방송법 등 타법에 따라 승인·등록·신고된 콘텐츠사업자가 IPTV에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 진입절차 없이 허용하도록 함



생생토크, 현장의 목소리

케이블TV에서 송출되는 채널을 운영하다 이제는 IPTV에서도 송출되도록 사업운동을 하고 싶어
알아봤더니, IPTV법상 방송채널사용사업을 다시 등록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이미 방송법상 방송
채널사용사업을 등록했는데 유사한 등록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니 몹시 불편한 이중규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별도 절차없이 방송법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IPTV법상 방송
채널사용사업자로 되다니 정말 편리하게 바뀌었네요.

회사원(방송채널사용사업 종사자)

미래창조과학부 뉴미디어정책과 (02-2110-1885)

3



정보통신

- 13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 한눈에!
- 14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범위를 명확하게
- 15 저렴한 정보통신공사업의 기업진단 비용

13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
한눈에!

Q

우리 회사, 정보보호가
잘 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네,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고
등급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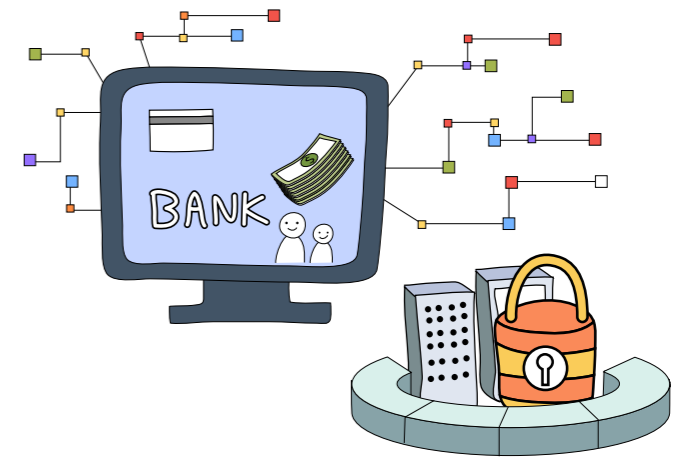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측정·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 마련

기업의 정보보호!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개선후(2013년 10월)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고 이용자로부터 정보보호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측정·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 마련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에 관한 고시 제정)



생생토크, 현장의 목소리

고등학교 친구들과끼리 소셜 커뮤니티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최근 개인정보 유출이나 결제 사기 등 인터넷을 통한 사고가 많아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등급별로 안내해주니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어느 기업이 안전한지를 한눈에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는 해킹 걱정 없이 안전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안심이 됩니다.

소셜 미디어(SNS) 이용자

해킹이나 악성코드 감염 등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고 기업의 자산을 지키기 위하여, 정보 보호 투자도 늘리고 관련 인력도 많이 채용했는데 우리 회사의 정보보호 수준이 어느 정도 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회사의 정보보호 수준을 경쟁 기업과 비교할 수 있게 되었으니, 부족한 부분은 좀 더 투자를 늘리고 우수한 부분은 적극 홍보하여 더욱 많은 고객들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인터넷 포털 서비스 사업자

미래창조과학부 정보보호정책과 (02-2110-2927)

14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범위를 명확하게

Q

부가통신사업자?
어떤 사업을 말하는 건지
갈피를 잡지 못하겠어요



A 범위가 모호한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적용대상의 명확화로 관련 시장의 혼란 및 과도한 행정처분 방지

부가통신사업자 범위규정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보충자료는
46쪽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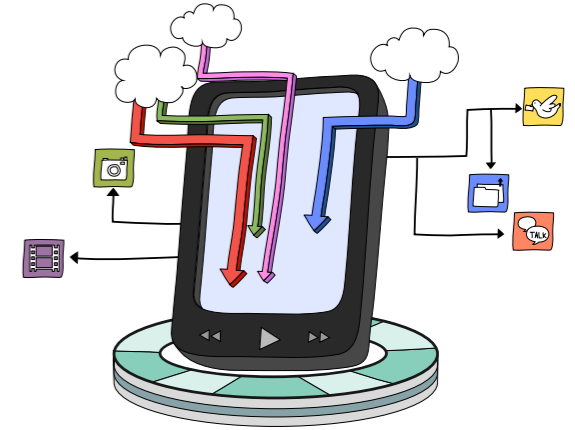
개선전

[제2조 제13호]

-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의 정의규정이 포괄적으로 규정("나"목)되어
- 규제적용 대상이 불명확하여 시장에 혼란 유발 요소 상존

개선후

- 법률 적용대상의 명확화로 관련 시장의 혼란 및 과도한 행정처분 방지를 위해
- "나"목의 삭제를 통한 등록대상 사업자의 법적 지위와 범위를 명확히 함



생생토크, 현장의 목소리

음란물 등 청소년 유해 콘텐츠 유통 방지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한 웹하드 등록제 운영에 대하여 적극 찬성합니다. 다만 기존 법에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범위가 모호한 부분이 있었는데 등록 대상자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부가통신사업자들의 입장에서 등록대상 여부에 대한 혼선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부가통신사업자(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한 사람으로 피땀흘려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웹하드 등을 통하여 불법 유통되어 개발자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에 불법소프트웨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이런 시책에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선량한 국민들이 보호될 수 있는 정책을 계속 추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서울 동작구 신림동)

미래창조과학부 정보문화과 (02-2110-2971)

15

저렴해진 정보통신공사업의 기업진단 비용

Q

기업진단, 작성주체 확대로
저렴해졌다는데...



A 앞으로 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는 물론 세무사도
기업진단을 할 수 있어 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세무사도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을 할 수 있도록 작성주체 확대

기업진단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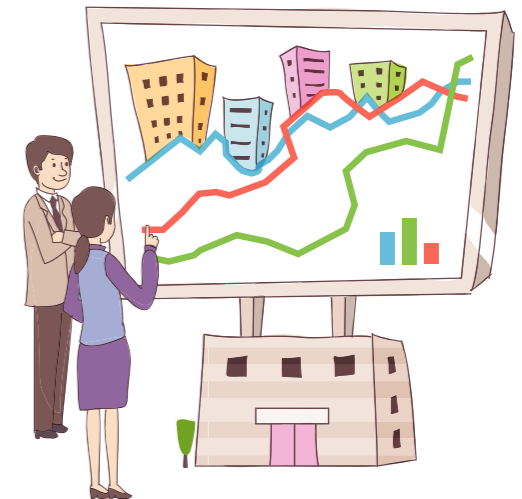


개선전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시 실질자본금 평가를 위한 기업진단 작성주체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 포함) 및 경영지도사로 한정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고시) 제3조)

개선후(2013년 6월 24일 시행)

세무사(세무법인 포함)도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을 할 수 있도록 작성주체를 확대하여
중소상공인의 영업 활성화 도모



생생토크, 현장의 목소리

CCTV, 주차관제장비, 경비보안장비 등 정보통신장비를 도·소매로 판매하다 해당 장비를 직접 설치하고,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필수적으로 자본금 평가에 대한 기업진단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같이 영세한 업체는 기업 진단 비용도 상당한 부담이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기업진단자 범위를 세무사까지 확대하면서 기업진단자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비용 또한 기존보다 50%이상 저렴한 평균 50만원 수준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보탬이 되는지 모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준비업체

미래창조과학부 네트워크기획과 (02-2110-2958)

14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등록범위를 명확하게!

◆ 웹하드 등록제 운영

불법저작물, 음란물 등 유통방지를 위하여 웹하드, P2P 등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 사업자 등록제 도입 (일반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는 신고제 운영)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11.5.19) 및 시행('11.11.20)

◆ 신·구 조문 비교 (전기통신사업자법 제2조 제13항)

현행	개정 ('13.8.13개정, '14.2.14시행)
<p>[제2조] 정의</p> <p>13.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p> <p>가.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부가통신역무</p> <p>나. 그 밖에 타인 상호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저장·전송하거나 전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가통신역무</p>	<p>[제2조] 정의</p> <p>13.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란 「저작권법」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부가통신역무를 말한다.</p> <p>가. 삭제 (2013.8.13)</p> <p>나. 삭제 (2013.8.13)</p>

◆ 저작권법 제 104조 제2항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 제1항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개인, 가족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가 아닌 공중이 저작물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웹사이트 또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본다.

①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업로드 한 자에게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① 유형 예시 :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해 쇼핑, 영화 및 음악감상, 현금교환 등을 제공하거나, 사이버머니, 파일 저장공간 제공 등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저작물 등을 불법적으로 공유하는 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유도하는 서비스

②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공중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다운로드 받는 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사업을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③ 유형 예시 : 저작물 등을 이용 시 포인트 차감, 쿠폰사용, 사이버머니 지급, 공간제공 등의 방법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서비스

③ P2P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상업적 이익을 얻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④ 유형예시 : 저작물 등을 공유하는 웹사이트 또는 프로그램에 광고게재, 타 사이트 회원가입 유도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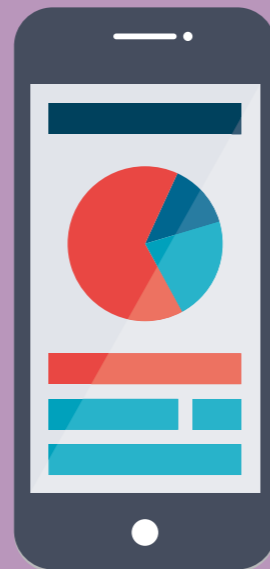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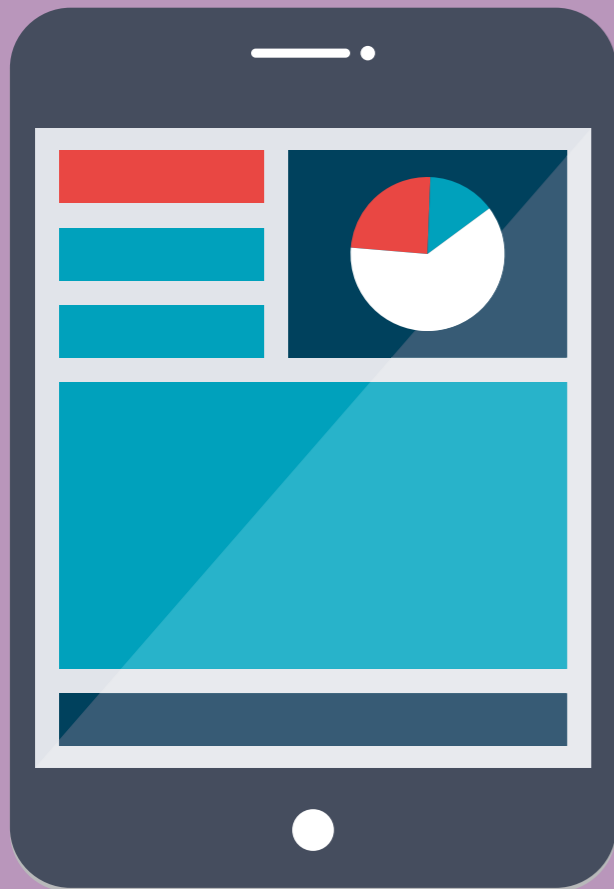
④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검색하여 전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상업적 이익을 얻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4

통신

- 16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 이제 가입시 선택
- 17 분실 또는 도난 신고된 휴대전화의 불법 사용 차단 강화
- 18 알뜰폰도 LTE서비스 등 부가서비스 개시
- 19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와이브로 이용요금 30% 감면
- 20 인터넷보다 정확한 114 상세주소안내서비스
- 21 별정통신사업, 허가완화로 국민 편의 제고
- 22 국제로밍 요금 정산협정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 23 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의무 면제 항목 확대



16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
이제 가입시 선택

Q

무조건 가입되는
소액결제서비스, 소비자에게
선택권이 없나요?



A 선제한 후허용 방식으로 서비스를 개선하여
금융피해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신청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개선전

통신요금 서비스가 별도의 신청없이 先허용 後제한 방식으로 운영되어, 사기등의 피해 발생

개선후(2013년 9월)

이용자(가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제한 후허용 방식으로 서비스 개선



생생토크, 현장의 목소리

자식놈이 선물해준 '스마트폰'이라는 걸 쓰는데, 어느 날 명세서를 보니 알지 못하는 곳에서
돈을 빼갔더군요. '스미싱'이라나 뭐라나 저 같은 피해를 입은 노인네들이 한둘이겠습니까?
이제 제도가 바뀌어 '소액결제'라는 것을 이용할지 안할지 미리 결정할 수 있다고 하니 '스마트폰
사기' 걱정 없이 맘 편히 쓸 수 있겠습니다 그려. 허허...

스미싱 피해노인(70대, 남)

어휴~ 말도 마세요.. 요새 스미싱 때문에 엄~청 피곤하다고요. 고객한테 전화가 와서, 왜 쓰지도
않은 요금이 빠져나갔냐고 항의 받을 땐 정말... 앞으로 가입할 때 소액결제 사용여부를 체크
할 수 있다고 하니 민원이 많이 줄어들 거 같아 벌써부터 행복하네요. 이런 제도를 만들어 주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동통신회사 상담원(20대, 여)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정책과 (02-2110-2966)

17

분실 또는 도난 신고된 휴대전화의
불법 사용 차단 강화

Q

휴대폰 잃어버렸는데
혹시 대포폰 등 나쁜 일에
쓰일까봐 걱정이에요!



A 불법적으로 유통, 원천봉쇄! 고유식별번호를
공유하도록 개선했습니다

분실 또는 도난 신고된 휴대전화 고유식별번호, 전기통신사업자간 공유

휴대폰 고유식별번호 공유!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보충자료는
66쪽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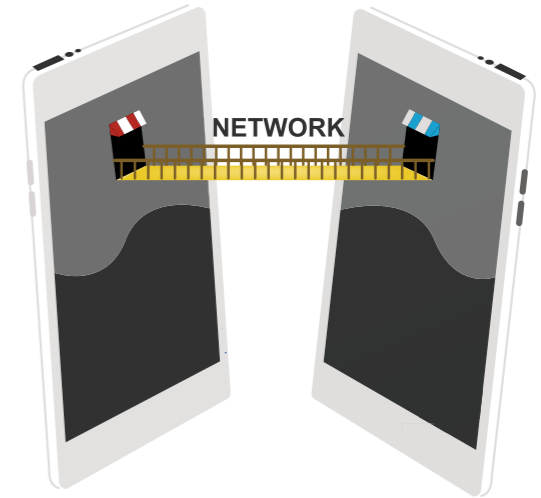


개선전

분실 또는 도난 신고된 휴대전화 고유식별번호의 전기통신사업자간 공유가 법제화되지 못함으로 인해
분실 또는 도난 신고된 휴대전화의 불법 유통 가능성이 존재

개선후(2013년 8월 13일 법개정, 2014년 2월 14일 시행)

분실 또는 도난 신고된 휴대전화 고유식별번호의 전기통신사업자간 공유의무를 법으로 부여함으로써
분실 또는 도난 신고된 휴대전화의 불법 유통을 차단



생생토크, 현장의 목소리

기존에도 분실 또는 도난 신고된 휴대전화의 고유식별번호에 대해서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자간 정보를 공유하여 분실·도난폰의 불법사용을 방지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정보의 공유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분실·도난폰의 불법유통 가능성이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미래부는 관련 법 개정(전기통신사업법, 2013년 8년 13일)을 통해 분실 또는 도난 신고된 휴대전화의 고유식별번호를 사업자간 의무적으로 공유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분실·도난폰의 불법 유통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였으며, 휴대폰을 훔치거나 습득한 사람이 이를 불법적으로 유통시킬 유인을 줄임으로써 분실·도난된 휴대폰이 원주인에게 회수될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 (02-2110-1937)

18

알뜰폰도 LTE서비스 등
부가서비스 개시

Q

알뜰폰으로 LTE급
동영상 시청이
가능할까요?



A LTE서비스는 물론 컬러링, MMS 등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알뜰폰도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와 동일한 서비스 제공

알뜰폰 서비스!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개선전

도매제공 의무서비스 범위를 2G·3G의 음성·데이터·SMS로 한정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제3조제1항)

개선후(2013년 6월)

2G·3G의 음성·데이터·SMS 뿐만 아니라 LTE 및 컬러링·MMS 등의 주요 부가서비스까지 도매제공
의무서비스 범위를 확대



생생토크, 현장의 목소리

매장을 방문하는 나이 드신 어른들이나 학생들에게 기존 이동통신사보다 요금이 훨씬 싼 알뜰폰을
많이 권유해 드리는데 처음에는 많은 관심을 보이다가도 막상 LTE서비스가 안된다고 하면 LTE
서비스를 이용할 계획이 없으면서도 알뜰폰이 큰 결함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결국 이동통신사
제품을 선택하시더군요. 이제는 알뜰폰도 LTE뿐만 아니라 컬러링·MMS·국제로밍 등 이동
통신사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를 모두 제공한다고 하니 자신 있게 알뜰폰을 권해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휴대폰 판매점 직원

알뜰폰 요금이 저렴하긴 하지만 LTE서비스가 안된다고 해서 가입을 망설였거든요. 평소 통화는
꼭 필요할 때만 하기 때문에 사실 LTE서비스나 부가서비스가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언제 또 마음이 변해서 LTE서비스를 이용하게 될지... 지금은 아무 걱정 없이 알뜰폰에 가입해서
정말 알뜰하게 이용하고 있어요.

알뜰폰 서비스 이용자

미래창조과학부 통신경쟁정책과 (02-2110-1925)

19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와이브로 이용요금 30% 감면

Q

부담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인터넷 이용 가능할까요?



A 저소득층에게 와이브로 서비스를 30% 저렴하게
공급하여 통신비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취약계층 요금감면 대상 서비스에 휴대인터넷(WiBro) 추가

휴대인터넷 요금감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보충자료는
66쪽에 있습니다



개선전

유선전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은 취약계층 요금감면 대상이나, 휴대인터넷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개선후(2013년 7월)

취약계층 요금감면 대상 서비스에 휴대인터넷(WiBro)을 추가하여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고, 스마트 정보
격차 해소에도 기여

휴대인터넷(WiBro)
30%



생생토크, 현장의 목소리

친구들이 스마트폰, 아이패드 등 고가의 스마트기기를 가지고 인터넷강의도 듣고, 영화도 보는
것이 부러웠습니다. 저는 노트북이 있어도 인터넷을 이용하기에 통신요금이 부담되어 인터넷
강의 등 대용량 파일을 이용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취약
계층에게 와이브로 이용요금을 30% 감면해 주어서 언제 어디서나 저렴한 요금으로 무선인터넷을
이용하게 되어, 이제는 덕분에 가끔 영화도 보곤 합니다.

취약계층 와이브로 가입자

미래창조과학부 통신경쟁정책과 (02-2110-1927)

20

인터넷보다 정확한
114 상세주소안내서비스

Q

인터넷에 서툰 어르신들,
손 쉽게 정확한 위치와 주소
찾을 순 없을까요?



A

114에서 찾고자 하는 가게 위치를
설명해 드립니다

상호명 가입자가 동의한 경우, 가입자에 대한 상세주소까지 제공

114 서비스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개선전

대부분의 114 이용자는 상호명 가입자의 전화번호와 상세주소를 문의하나, 현행 법령상 상세주소 안내 불가(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1조)

개선후(2014년 1월)

상호명 가입자가 동의한 경우, 가입자에 대한 상세주소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영업 활성화 도모(동 시행령 개정)



생생토크, 현장의 목소리

요즘들어 부쩍 건강이 안 좋아지신 저희 부모님은 좋다고 소문난 병원을 찾아다니시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스마트폰은 물론 인터넷에 대해 문외한이신 부모님께서 처음 가보시는 병원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움직이시기가 어려워서 이제까지는 제가 직접 시골로 내려가서 부모님을 모시고 방문을 하였죠. 하지만 병원 이름만 알려주면 정확한 위치와 위치까지 설명해주는 114 상세주소 안내로 부모님께서 직접 병원을 찾아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게 바쁘는데 미안하다 하시던 아버지도 이제 본인이 직접 전국 어디든 다 찾아가실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 하십니다.

이충효(서울시)

재작년에 개업한 저희 가게는 메뉴판을 두지 않고 그날그날 들어온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손님들께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픈한지 1년도 되지 않아 입소문을 타고 물어 물어 오시는 손님까지 생길 정도로 반응이 좋답니다. 하지만 저희 가게가 국제시장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손님들께서 오시기 전에 꼭 전화로 위치를 물어보시고 찾아 주십니다. 안내를 해드려도 길을 헤매다가 오시는 손님들도 많구요. 그래서 영업 시간 중에 위치 문의전화가 하루에 20~30통씩 오고 있어서 음식 만드랴, 오시는 손님 응대하랴 정말 몸이 열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위치 문의전화가 조금씩 줄어들었고, 문의전화도 주시지 않고 찾아오신 손님도 계셔서 어떻게 오셨느냐고 여쭙보니 114에서 가게 위치를 잘 설명해 주셨다고 하더군요. 생각해보니 지난달에 통신사에서 주소안내에 대한 동의 전화가 왔을 때 스티커 알겠다고 하고 끊은 때가 생각이 났어요! 인터넷 지도만으로는 잘 찾기가 힘든 복잡한 길을 114에서 잘 설명을 해주셔서 요즘에는 손님들도 계속 늘어나니 114가 너무 고마울 따름입니다.

최영락(부산시)

※ 114 상세주소 안내서비스는 '14. 1월경부터 서비스 예정

미래창조과학부 통신경쟁정책과 (02-2110-1943)

21

별정통신사업,
허가완화로 국민 편의 제고

Q

별정통신사업을
준비 중인데 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지나요?



A 행정청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고,
거부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승인하도록
하였습니다

별정통신사업 진입규제를 원칙허용(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별정통신사업 허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보충자료는
67쪽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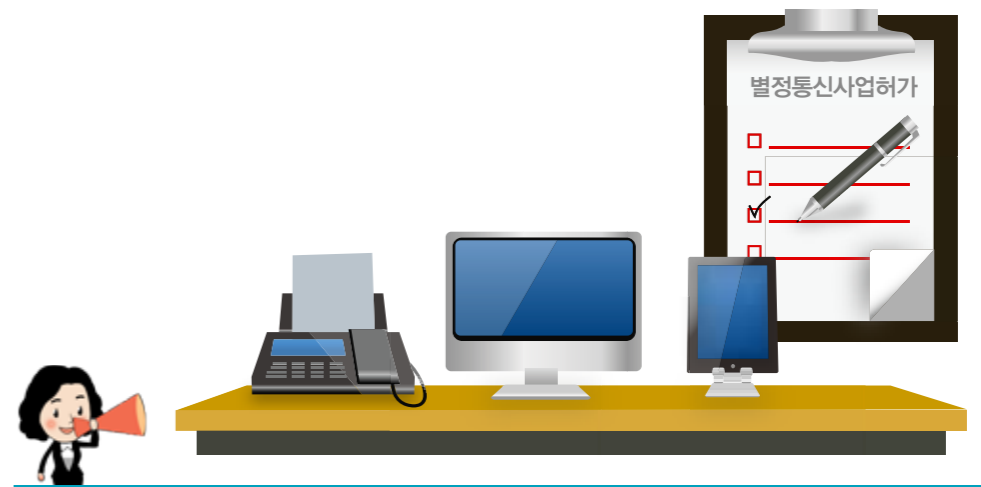


개선전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재정·기술능력, 이용자보호계획 등을 갖추어 미래부에 등록하여야 함
※ 관련조항: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

개선후(2014년 1월)

- 별정통신사업 진입규제를 원칙허용(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예외적 등록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 등록 거부사유를 등록요건 미비, 구비서류 흠결, 법인이 아닌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고, 이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



생생토크, 현장의 목소리

별정통신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국민들의 사업 등록 신청 과정이 한층 편리해집니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추진 중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별정통신사업 등록 신청 시 행정청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고, 거부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 법이 개정되면 사업등록과정에서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가 방지되고 별정사업 등록을 요청한 국민이 등록여부에 대해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국민의 행정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 (02-2110-1937)

22

국제로밍 요금 정산협정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Q

로밍요금 정산협정시
매번 미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A 정산협정을 사전적으로 규제할 실효성이
낮아짐에 따라 신고제로 완화했습니다.

국제로밍 요금 정산 계약 시 신고제로 완화

국제로밍 신고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보충자료는
67쪽에 있습니다



개선전

전기통신사업자가 해외사업자와 국제로밍 요금 정산 계약 시 미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개선후(2013년 3월 23일)

신고제로 완화



생생토크, 현장의 목소리

전기통신사업자가 해외사업자와 국제로밍 요금 정산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기존에 미래부가 승인하던 절차가 신고절차로 완화됩니다.

계약 사항은 국제 관련 기구(GSM 협회 및 CDMA 발전협회 등)의 권고사항을 따르고, 최근 3년간 불승인 사례가 없는 등 승인제 운영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동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 하였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 (02-2110-1932)



23

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의무 면제 항목 확대

Q

이번에 사업체를 합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부가통신사업 신고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면제받습니다

부가통신사업 양도·양수 및 합병·상속에 있어 신고 면제

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의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보충자료는
68쪽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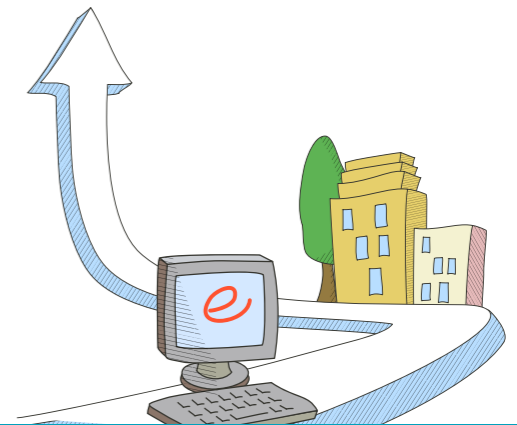
개선전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미래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자본금 1억원 미만의 사업자와 기간통신 사업자는 신고가 면제되고 있으나, 사업의 양도·양수 및 합병·상속의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부여
※ 관련조항: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제24조(사업의 양도·양수 등)

개선후(2013년 3월 23일)

부가통신사업 신고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양수 및 합병·상속에 있어서도 신고를 면제

- 부가통신사업 양도·양수 및 합병·상속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1억원 미만인 경우 등 부가통신사업 신고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한 것으로 봄



생생토크, 현장의 목소리

소규모의 영세한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합병·상속할 경우 행정 처리에 대한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입니다.

현재 자본금 1억 미만의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자에게는 신고 의무가 면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자들도 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합병·상속하는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해당 부가통신사업자가 신고 면제 대상일 경우 사업의 양도·양수 및 합병·상속 시에도 신고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동 법이 개정되면 부가통신사업 신고 면제제도의 도입 취지가 양수·합병 시에도 반영됨으로서 영세한 부가통신사업자의 규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 (02-2110-1937)

보충자료

17 분실 또는 도난 신고된 휴대전화의 불법 사용 차단 강화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관련 내용('13.8.13 개정, '14.2.14 시행)

현행	개정 ('13.8.13개정, '14.2.14시행)
규정 없음	<p>제60조의2(분실 등으로 신고된 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p> <p>①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신고된 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을 위하여 해당 통신단말장치의 고유한 국제 식별번호(이하 "고유식별번호"라 한다)를 전기통신사업자 간에 공유하여야 한다.</p> <p>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고유식별번호의 효율적인 공유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p> <p>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신고된 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④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19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와이브로 이용요금 30% 감면

◆ 감면내용

구분	장애인·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비고
시내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225분) 무료		
시외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3만원 한도)	시외통화 75도수(225분) 무료		
인터넷 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 무료		
이동전화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가입비 면제 기본료(15,000원 한도) 면제 및 통화료 50% 감면(총 3만원 한도) ※월 최대 22,500원 감면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 각각 35% 감면(총 3만원 한도) ※월 최대 10,500원 감면	알뜰폰(MVNO) 사업자 제외
번호안내	114 안내요금 면제	114 안내요금 면제		
초고속 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월 이용료 30% 감면		
휴대 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월 이용료 30% 감면		

◆ 신청방법

-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해당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
- 문의처 : 미래창조과학부CS센터(1335)
- 제도 설명 사이트 :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 정책 > 통신정책국 >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안내"

21 별정통신사업, 허가완화로 국민 편의 제고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개정안 국회 상정('13.11월 현재)

현행	개정안
제21조(별정통신사업의 등록) ①·② (생략)	제21조(별정통신사업의 등록)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에 따른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은 법인만 할 수 있다.	<p>③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p> <p>①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p> <p>②법인의 정관 및 이용약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p> <p>③등록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p>
④·⑤ (생략)	④·⑤ (생략)

22 국제로밍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개정안 국회 상정('13.11월 현재)

현행	개정안
제86조(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승인) ①~③ (생략)	제86조(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승인) ①~③ (현행과 같음)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을 통한 국제서비스의 요금 정산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삭 제
⑤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4항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제3항에 따른 신고와 관련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3 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의무 면제 항목 확대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개정안 국회 상정('13.11월 현재)

현행	개정안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금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의 경우에는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① _____ _____ _____. <후단 삭제>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기간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에는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① 자본금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 ②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
⑤ 제1항 전단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및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는 신고 또는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⑤ 제1항 _____ _____.
⑥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 _____ _____.
제23조(등록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별정통신사업자,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는 그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변경등록 또는 변경 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23조(등록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_____ 제22조제1항 _____ _____ _____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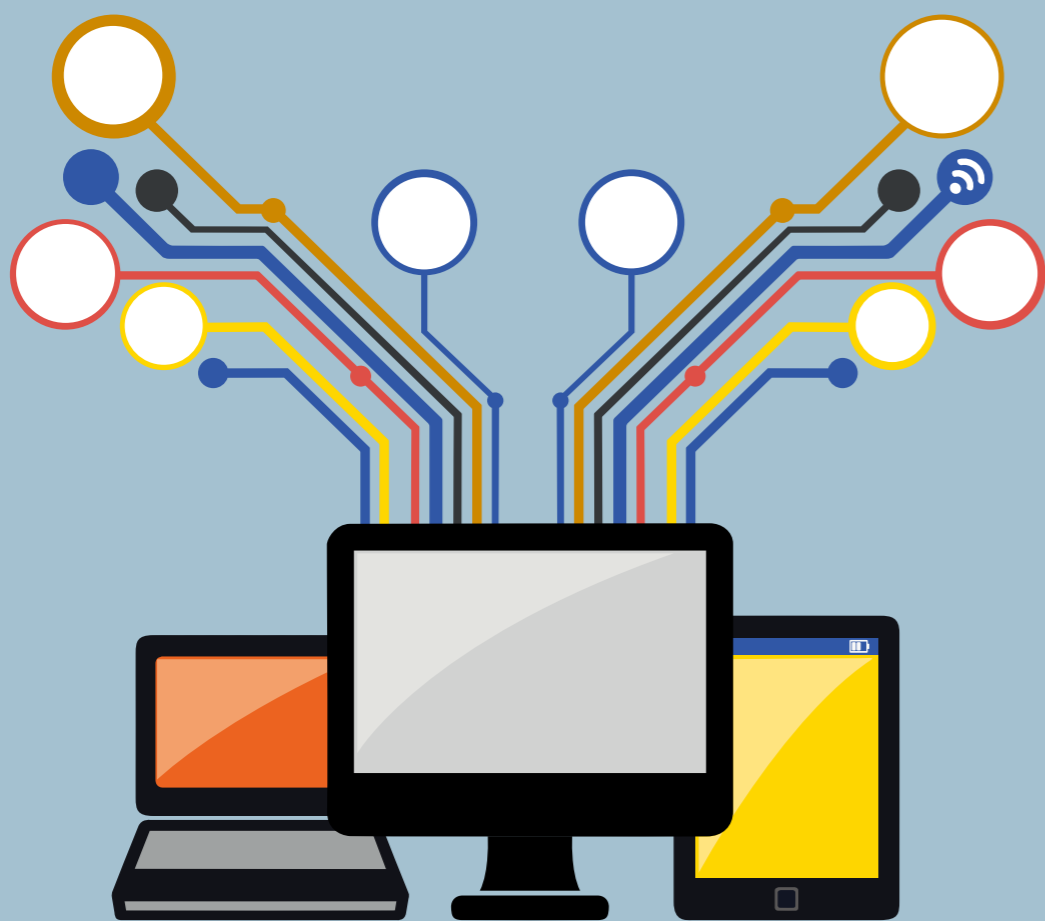
제24조(사업의 양도·양수 등) 별정통신사업 또는 부가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양수가 있거나 별정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이나 제4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법인의 합병·상속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_____ 제22조제1항 _____ _____ 같은 조 제4항 _____ _____ 다만, 부가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양수 또는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상속으로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①~③ (생략)	①~③ (현행과 같음)
⑤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4항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신고와 관련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

전파

24 전파인증! 쉽고 빠르게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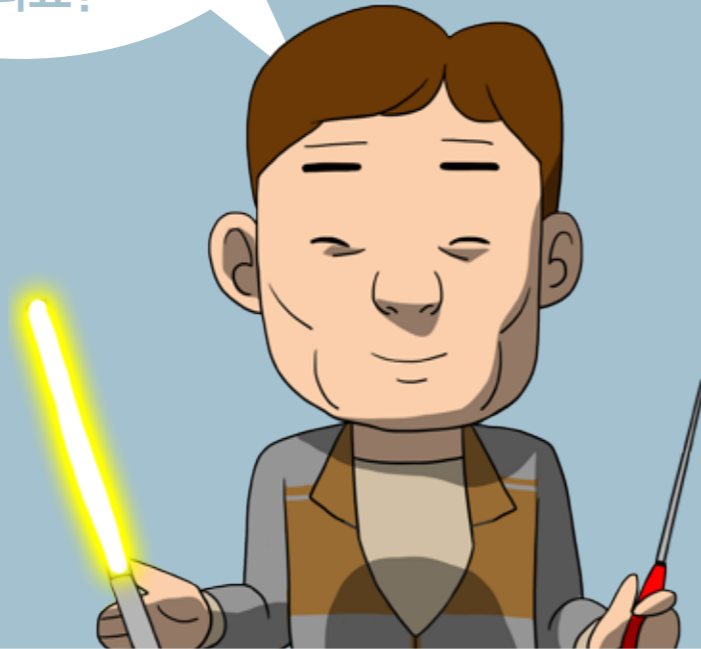


24

전파인증!
쉽고 빠르게 개선

Q

새 LED 조명을 출시할 때
색상만 바뀌어도
인증시험을 새로 받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전자파 영향이 경미한 부품을 변경할 때는
인증시험 없이 변경신고를 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변경신고시 재시험 면제 범위 확대

전파인증!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개선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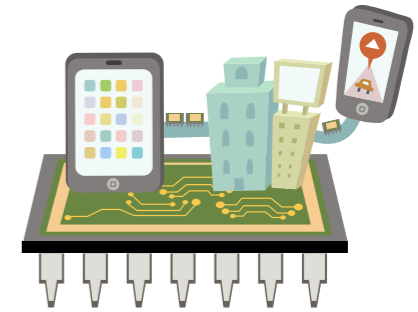
변경신고시 재시험 면제 범위

- 파생모델명을 변경하는 경우
- 제조자 또는 제조국가를 변경하는 경우
- 상호 · 성명 ·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개선후(2013년 3월 23일)

변경신고시 재시험 면제 범위

- 파생모델명을 변경하는 경우
- 제조자 또는 제조국가를 변경하는 경우
- 상호 · 성명 ·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 저항, 인덕터, 캐패시터를 변경하는 경우
- 다이오드(발광다이오드 포함)를 변경하는 경우
- 전기적 회로는 동일하고 전력용량을 축소하는 경우



생생토크, 현장의 목소리

조명기기는 똑같은 회로인데 색깔만 다른 다양한 LED등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는 전파인증받은 기본모델에서 발광다이오드 부품만 바뀌는데 그래도 인증시험을 다시 받아야 해서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되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전자파 영향이 경미한 부품을 변경할 때는 인증시험 없이 변경신고를 하도록 개선이 되어 시험비용과 시간이 크게 단축(30만원→2천원 / 1~2주→즉시)되어 제품출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야말로 제조업체의 어려움을 제도에 반영한 규제완화로 손톱 밑의 가시를 없애준 거죠.

LED 조명업체

제품 생산기업들은 여러 부품업체에서 부품을 공급받으므로 처음 전파인증받은 기본 모델에서 사소한 부품이 변경된 모델로 생산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인증 받은 기본 모델과 같은 회로이면서 출력을 바꾸어 여러 가지 모델의 제품을 만드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경우 사소한 부분이 바뀐 모델도 인증시험을 다시 받아야 되어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되었어요. 하지만 인증시험 없이 변경신고를 하도록 개선이 되어 제품출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중소기업 사장

미래창조과학부 전파기반팀 (02-2110-1981)

6



우정사업

- 25 국제특급, 요금중량 세분화
- 26 우체국 보험금 청구, 간편하게 개선

25

국제특급,
요금중량 세분화

Q

500g 단위의 국제우편요금,
100g 초과해도
500g요금 내는 건
억울해요!

600g



A **요금체계 세분화로 중량별로 적정요금을
낼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국제특급(EMS) 요금체계를 2Kg이내에 한하여 250g 단위로 세분화

국제특급 요금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개선전

국제특급(EMS) 요금은 500g 단위로 구성

개선후(2013년 1월 1일)

500g단위의 국제특급(EMS) 요금체계를 2Kg이내에 한하여 250g 단위로 세분화



생생토크, 현장의 목소리

해외온라인 쇼핑을 통해 액세서리 등 2kg 이하 소형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조그맣게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동안 국제우편요금은 500g 단위로 정해져 있어서, 제가 보내는 물품이 600g 임에도 불구하고 1Kg 요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600g 우편물을 500g으로 맞추기 위해 재포장하는 수밖에요.

그런데 이번에 우체국에서 시행한 EMS 요금 세분화 덕분에 물품 1개당 발송요금이 1,300원이 절감되고, 그 지긋한 재포장 일도 없어서 절로 흥이 납니다.

최근에는 해외 온라인 판매도 사업자간 경쟁이 치열하여 사업유지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당연히 배송비용 절감 등을 통해 판매량을 증가시키는 것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차에 우체국에서 우리 같은 사업자를 위한 요금정책을 마련해주었다는 소식을 듣고 한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우리 같은 소상공인을 배려하여 요금정책을 마련해 주었으니 앞으로도 우체국과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온라인쇼핑 사장

해외에 배송할 물량이 많은데 제품의 특성상 물품 중량이 달라서 200g인 것도 있고, 400g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편요금은 항상 500g 단위로 되어 있어 200g 물품도 항상 500g 물품과 동일하게 요금을 지불해야 했죠. 그런데 이번에 바뀐 EMS 요금체계 세분화 정책 덕분에 물품 중량별로 적정요금을 낼 수 있게 되었고, 저 같은 물품을 보내는 사람들은 운송료 인하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어 참 좋습니다. 서비스가 좋은 우체국 EMS인데 이런 추가적인 제도가 생겨서 앞으로도 더욱 기대가 되네요.

의료기기판매업 사장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 (02-2195-1241)

26

우체국 보험금 청구,
간편하게 개선

Q

보험금 청구!
방문처리만 된다고 하네요!
시간도 돈도 아까운데,
어쩌죠?



A 이제 달라진 서비스로
편리함을 누리세요!

우편, 팩스 청구가능 금액 확대, 실손통원의료비 20만원까지 진료비 영수증만 제출

우체국 보험금 청구!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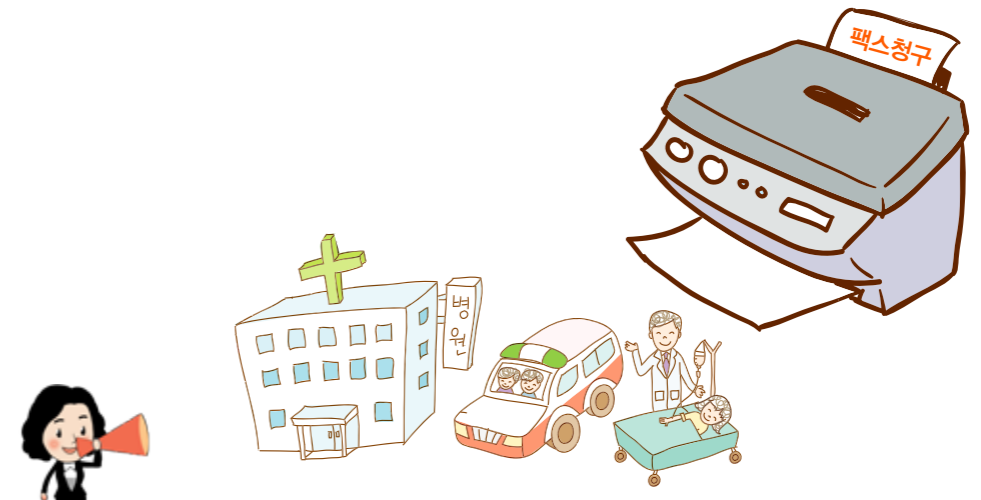


개선전

우체국 보험금 청구 시 우편·팩스는 소액 청구만 가능하여 거동불편자, 인터넷 미숙련자 등의 불편 초래

개선후(2013년 8월 28일 시행)

- 우편청구는 금액과 상관없이 가능하며, 팩스청구는 10만원→20만원으로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고객 불편 해소
- 보험금 청구 시 진료비 영수증만 받는 서류 간소화 대상도 실손 통원의료비 10만원→20만원으로 확대함



생생토크, 현장의 목소리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우체국보험의 진단비, 수술비 등을 청구 하려니 꼭 우체국을 방문해야만 된다고 하더군요. 우편·팩스는 소액 청구만 가능하다고 해서 불편했는데, 이제는 금액과 상관없이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하고, 팩스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도 확대된다니 정말 반가운 소식이에요. 그야말로 사소하지만 불편한 사항이 이렇게 해결되어 너무 기쁩니다.

가정주부(서울 노원구 상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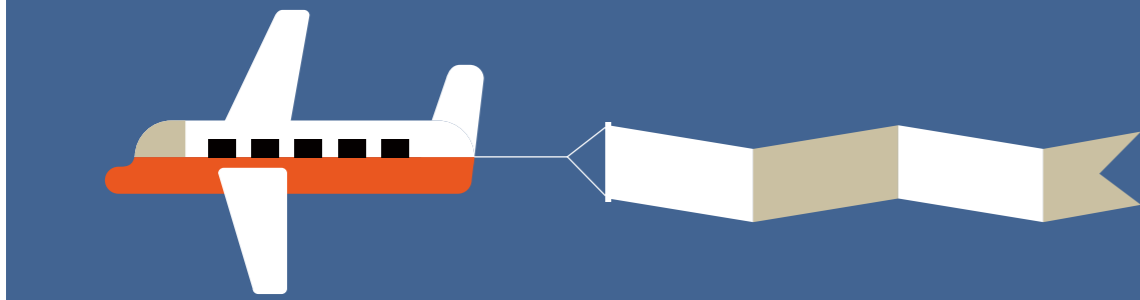
다리가 아파 병원에 통원치료를 하고 나서 우체국에 보험금을 청구 했더니,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네요. 얼마 되지 않는 보험금을 받는데 왜 그렇게 까다로운지 정말 큰 불만이었는데, 이제 실손 통원의료비는 20만원까지 진료비 영수증만 있어도 된다고 하니, 앞으로는 엄청 편해질 것 같습니다. 이런 편리한 서비스가 있다는 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네요.

회사원(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우정사업본부 보험개발심사과 (02-2195-1651)

행복한 미래를 창조하는 규제개선

미래창조과학부는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귀담아 듣겠습니다
생활 속 작은 불편이라도 빠르고
올바르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 규제개선 추진현황

1. 2013년도 규제정비종합계획 추진

국정과제와 연계된 규제정비과제 위주로 수립된 2013년도 규제정비 종합계획, (2013년 4월 9일 국무회의 보고)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15개 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분	국정과제	규제정비과제	조치사항	완료 일정
1	세계최고의 인터넷 생태계 조성	도메인이름 등록시 주민등록증 사본 등 제출서류 완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법 시행령 개정	'13. 5월
2	정보통신 최강국 건설	IPTV 대상 공익채널 편성운용 의무 부과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	'13.12월
3		IPTV 콘텐츠 제공사업자 외국인 지분규제 완화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	'13.12월
4		유료방송 부가서비스 이용요금승인제 완화	방송법 개정안 국회 제출	'13. 9월
5		외국방송 재송신 채널수 제한 개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	'13. 9월
6		정보보호 관리등급 제도 인증기준 및 절차 마련	정보보호관리등급 부여에 관한 고시 개정	'13. 9월
7		방송사업간 기술결합 서비스 정책방안 마련	방송법 개정안 국회 제출	'13. 6월
8		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	전자파 유해성이 경미한 부품변경시 인증 면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
9	국가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연구실 현장 조사 일원화	행정조사 시행계획 수립	'13. 3월
10	통신비 부담 낮추기	USIM 이동 대상에 LTE 포함	상호접속기준고시 개정	'13. 6월
11		분실·도난단말기 유통차단 강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13. 5월
12		중소 이동통신사업자(MVNO)제공서비스 확대	도매제공고시 개정	'13. 6월
13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대상서비스 확대	보편적역무고시 개정	'13. 6월
14	지원과제 (중소기업 애로해소)	정보통신공사사업기업 진단보고서작성주체 확대	정보통신공사사업 기업진단 요강(고시) 개정	'13. 6월
15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공사업체에 대한 행정 처분유예	정보통신공사사업법 시행령 개정	'13.12월

2.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애로 개선 (손톱밀 가시뽑기)

규모는 작지만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주고,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개선 과제를 선정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손톱 밀 가시 뽑기)

구분	순번	과제명	조치사항	완료 일정
1차 (6건)	1	정보통신공사사업 기업진단보고서 작성 주체 확대	「세무사법」 제6조 따라 등록된 세무사 및 세무법인도 정보통신공사사업 기업진단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	'13. 5월
	2	화생기업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행정처분 유예	「정보통신공사사업법」등에서 규정하는 타 업종에도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행정처분(영업정지) 유예 근거 마련	'14.6월
	3	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요건 완화	소기업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공간을 칸막이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13.12월
	4	통신기자재 부품변경시 재시험 절차 면제	이미 인증 받은 제품의 경우, 전자파 유해성이 경미한 부품을 교환하는 때에는 재시험을 받지 않고 변경 신고만 하도록 개선	'13.6월
	5	114 번호안내시 중소기업의 상세주소 안내	상호명 가입자가 동의한 경우, 가입자에 대한 주소를 상세주소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범위 확대	'13.6월
	6	알뜰폰사업자(중소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한 의무제공서비스 확대	LTE 및 이용자 선호도가 높은 컬러링·MMS·국제전화 로밍 등의 주요 부가서비스를 도매제공 의무 서비스에 포함토록 도매제공 고시 개정	'13.6월
2차 (6건)	1	우체국 EMS(국제특송) 요금 체계 세분화	소규모 우편물(0.5kg ~ 2kg이내 구간)의 EMS 우편요금 중량단계를 현행 500g에서 250g 단위로 구간을 세분화하여 물류비 부담 경감	'13.8월
	2	창업초기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설립요건 완화	인적요건은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기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 물적요건은 연구공간을 칸막이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시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의 개정 추진	'13.12월
	3	온라인광고 사업자 간 분쟁예방 및 피해구제	온라인광고시장에서 사업자 간 분쟁을 예방하고, 부당한 피해로부터 중소기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분야별 표준계약서 마련	'13.12월
	4	안전한 모바일 오피스 이용환경 조성	모바일 오피스 구축·운영기업들이 정보보호 기술 수준을 이해하고 직접적으로 적용 할 수 있도록 「모바일 오피스 기술 보안 지침(안내서)」 마련	'13.12월
	5	미성년자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절차 개선	미성년자의 서비스 가입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없이 온라인상으로 부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 개선	'13.12월
	6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제공방식 변경	이용자(가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先제한 後허용) 서비스 제공방식 개선	'13.6월
권익위 (2건)	1	우체국보험 우편·팩스 청구방식이용시 상한금액 확대	보험금 청구서류 간소화(진료비영수증 등) 및 보험금 청구채널 확대(창구 → 우편, FAX청구는 20만원으로 상향조정)토록 개선	'13.7월
	2	요금감면 의무제공사업자에별정통신사(MVNO) 포함	MVNO사업자도 요금감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공사업자로 지정하고, 관련 고시(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등에 관한 기준) 개정	'14.1월

3. 네거티브 규제방식 전환 추진

1 추진 배경

신산업 발전촉진 및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기존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의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 세부시행지침」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소관법령 중 기업활동 관련 법령에 대한 네거티브 전환 정비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2 추진 계획

17개 대상법령 210건 규제 가운데 16개 포지티브 등의 규제를 네거티브로 전환, 22개 규제를 완화, 76개 규제를 재검토형 일몰로 지정하는 등 총 114개 규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구분	계	네거티브 전환	규제완화	일몰지정
정비대상 규제(개)	114	16	22	76

3 세부 내용

◎과학기술기본법

규제명	개선방향	관련조문	재검토 일몰	완료 일정	담당과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대상 기관을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도록 개정	시행령 제35조		'14.6 개정	과학기술 정책과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제명	개선방향	관련조문	재검토 일몰	완료 일정	담당과
비파괴검사사업의 등록	방사선 비파괴검사사업의 등록기준을 원자력 안전법상 허가 기준으로 합리적 개선	시행령 제10조	3년 일몰	'14.6 개정	원자력 진흥정책과
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비파괴검사사업자의 위반행위의 횟수 및 경중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	시행규칙 제7조		'14.6 개정	원자력 진흥정책과

◎협동연구개발촉진법

규제명	개선방향	관련조문	재검토 일몰	완료 일정	담당과
연구개발비의 지원	「산학연협력력을 통한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동 규정을 흡수	법제5조		개별 입법 계획에 의거	연구공동체 지원과
연구개발정보의 공동이용	「산학연협력력을 통한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동 규정을 흡수	법제7조		개별 입법 계획에 의거	연구공동체 지원과
연구개발시설 등의 공동이용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 이용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적극 협조하도록 공동 이용 허용의무를 완화	법제8조		개별 입법 계획에 의거	연구공동체 지원과

◎과학기술기본법

규제명	개선방향	관련조문	재검토 일몰	완료 일정	담당과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대상 기관을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도록 개정	시행령 제35조		'14.6 개정	과학기술 정책과

◎우주손해배상법

규제명	개선방향	관련조문	재검토 일몰	완료 일정	담당과
권리행사 기간	재검토 일몰지정	법제8조	3년 일몰	개별 입법 계획에 의거	우주 정책과

◎전기통신사업법

규제명	개선방향	관련조문	재검토 일몰	완료 일정	담당과
상호접속 등 협정의 신고 등	상호접속 등 협정 체결 시 인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하고, 경미한 협정변경은 신고·인가를 면제	법 제44조		개별 입법 계획에 의거	통신경쟁 정책과
전기통신설비 설치의 신고 및 승인	재검토 일몰지정	법 제62조	3년 일몰	개별 입법 계획에 의거	통신자원 정책과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재검토 일몰지정	법 제64조	3년 일몰	개별 입법 계획에 의거	통신자원 정책과

규제명	개선방향	관련조문	재검토 일몰	완료 일정	담당과
공동구 또는 관로 등의 설치 등	재검토 일몰지정	법 제68조	3년 일몰	개별 입법 계획에 의거	통신자원 정책과
구내용 전기통신선로 설비 등의 설치	재검토 일몰지정	법 제69조	3년 일몰	개별 입법 계획에 의거	정보통신 방송기술 정책과
별정통신사업의 등록	별정통신사업 등록이 제한되는 사유를 구체화하고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하도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	법 제21조		개별 입법 계획에 의거	통신이용 제도과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등록을 하여야 하는 특수 유형 부가통신사업 정의규정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법 적용대상이 다소 모호함에 따라 동 정의규정을 구체화하도록 개선	법 제2조	3년 일몰	개별 입법 계획에 의거	정보 문화과
임원의 결격사유	기간통신사업자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일정한 결격사유(예: 집행유예 선고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의 목적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비	법 제9조		개별 입법 계획에 의거	통신정책 기획과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한-미, 한-EU FTA에 따라 FTA 체결 상대국의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간접투자 제한 폐지	법 제8조		개별 입법 계획에 의거	통신정책 기획과
주식의 상호소유의 제한 등	재검토 일몰지정	법 제59조	3년 일몰	개별 입법 계획에 의거	통신정책 기획과
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승인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을 통한 국제서비스의 요금 정산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래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을 신고제로 완화	법 제86조	3년 일몰	개별 입법 계획에 의거	통신이용 제도과
허가의 변경	재검토 일몰지정	법 제16조	3년 일몰	개별 입법 계획에 의거	통신정책 기획과
사업의 겸업	재검토 일몰지정	법 제17조	3년 일몰	개별 입법 계획에 의거	통신정책 기획과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기간통신사업의 인수·합병이 통신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에는 기존인가 심사 기준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법 제18조	3년 일몰	개별 입법 계획에 의거	통신정책 기획과
사업의 휴지·폐지	기간통신사업자의 사업 휴·폐지 승인 신청 시 승인을 거부할 구체적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승인하도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정비	법 제19조		개별 입법 계획에 의거	통신정책 기획과

사업의 양도·양수 등	부가통신사업 신고면제 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자본금 1억원 미만)에는 양도·양수, 합병 및 상속 시에도 신고를 면제하도록 완화	법 제24조		개별 입법 계획에 의거	통신이용 제도과
업무의 제한 및 정지	재검토 일몰지정	법 제85조	3년 일몰	개별 입법 계획에 의거	비상안전 기획관

◎정보통신공사업법

규제명	개선방향	관련조문	재검토 일몰	완료 일정	담당과
정의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 건축물 내의 정보통신설비의 설계 및 감리를 전문기술력을 보유한 정보통신 용역업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법 제2조		개별 입법 계획에 의거	네트워크 기획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등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에 대해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법 제14조 시행령 제6조	3년 일몰	개별 입법 계획에 의거	네트워크 기획과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기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요건을 공사업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개정	법 제15조 시행령 제21조	3년 일몰	개별 입법 계획에 의거	네트워크 기획과
시공능력의 평가	재검토 일몰지정	시행령 제27조	3년 일몰	'13. 하반기	네트워크 기획과
정보통신기술자 배치	재검토 일몰지정	시행령 제34조	3년 일몰	'13. 하반기	네트워크 기획과
공사의 사용전검사	재검토 일몰지정	시행령 제35조	3년 일몰	'13. 하반기	네트워크 기획과
공사의 사용전검사 등	재검토 일몰지정	시행령 제36조	3년 일몰	'13. 하반기	네트워크 기획과
공사의 제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 및 시공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를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정한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공사제한의 범위를 최소화하여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법 제3조 시행령 제4조	3년 일몰	개별 입법 계획에 의거	네트워크 기획과
설계대상인 공사의 범위	재검토 일몰지정	시행령 제6조	3년 일몰	'13. 하반기	네트워크 기획과
감리대상인 공사의 범위	재검토 일몰지정	시행령 제8조	3년 일몰	'13. 하반기	네트워크 기획과

규제명	개선방향	관련조문	재검토 일몰	완료 일정	담당과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재검토 일몰지정	시행령 제11조	3년 일몰	'13. 하반기	네트워크 기획과
공사업자의 감리제한	재검토 일몰지정	시행령 제15조	3년 일몰	'13. 하반기	네트워크 기획과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재검토 일몰지정	시행령 제50조	3년 일몰	'13. 하반기	네트워크 기획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규제명	개선방향	관련조문	재검토 일몰	완료 일정	담당과
기술기준	재검토 일몰지정	법 제28조	3년 일몰	개별 입법 계획에 의거	정보통신방송 기술정책과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에 대해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법 제25조	3년 일몰	개별 입법 계획에 의거	정책 총괄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규제명	개선방향	관련조문	재검토 일몰	완료 일정	담당과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을 지정시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지정하도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	법 제5조	3년 일몰	개별 입법 계획에 의거	소프트웨어 융합과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조성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요건을 최소한의 요건으로 완화	법 제6조	3년 일몰	개별 입법 계획에 의거	소프트웨어 융합과

◎방송법

규제명	개선방향	관련조문	재검토 일몰	완료 일정	담당과
방송사업 허가·승인 등	전송망사업의 등록이 금지되는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하도록 네거티브방식으로 규정을 개정	법 제9조	3년 일몰	개별 입법 계획에 의거	뉴미디어 정책과
수수료	재검토 일몰지정	법 제102조	3년 일몰	개별 입법 계획에 의거	방송산업 정책과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대한 기술기준과 준공검사	재검토 일몰지정	고시(유선 방송설비의 준공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 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 사업의 등록	3년 일몰	'13. 하반기	뉴미디어 정책과

전송선로 설비의 확인	재검토 일몰지정	고시(유선 방송설비의 준공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 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 사업의 등록	3년 일몰	'13. 하반기	뉴미디어 정책과
전송망사업자 약관 신고	재검토 일몰지정	고시(유선 방송설비의 준공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 사업의 등록	3년 일몰	'13. 하반기	뉴미디어 정책과
유료방송의 약관 승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등이 제공하는 유료방송 상품의 이용요금에 대한 승인제를 VOD 등 일부 상품에 대해 신고제로 완화	시행규칙(안) 제17조	3년 일몰	'13. 하반기	뉴미디어 정책과
지상파방송의 재송신	유료방송사업자간 규제형평성을 고려하여 위성방송사업자가 지상파방송의 방송구역 외에서 동시재송신하는 경우에만 승인받도록 규제 완화	시행규칙(안) 제18조	3년 일몰	'13. 하반기	미디어 정책과
외국방송 재송신	외국인의 거주비율 등을 고려하여 미래부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외국방송 재송신 범위 제한을 30/1000이내로 완화	시행규칙(안) 제19조	3년 일몰	'13. 하반기	방송산업 정책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규제명	개선방향	관련조문	재검토 일몰	완료 일정	담당과
사업의 허가 등	IPTV 제공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	법 제4조		개별 입법 계획에 의거	뉴미디어 정책과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등	IPTV 콘텐츠사업자 중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49%)을 폐지하여 전기통신사업법과의 규제형평 확보	법 제9조		개별 입법 계획에 의거	뉴미디어 정책과
콘텐츠의 공급 등	방송법 등 타법에 따라 승인·등록·신고한 콘텐츠사업자가 IPTV에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 진입절차 없이 허용	법 제18조		개별 입법 계획에 의거	뉴미디어 정책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규제명	개선방향	관련조문	재검토 일몰	완료 일정	담당과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신청 후 지정까지의 처리기간을 180일에서 150일로 단축하도록 개정	시행규칙 제9조	3년 일몰	'13. 하반기	지능통신 정책과
공인전자문서증계자의 지정	공인전자문서 증계자의 지정신청 후 지정까지의 처리기간을 10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도록 개정	시행규칙 제16조의2	3년 일몰	'13. 하반기	지능통신 정책과
공인전자문서증계자 지정취소	재검토 일몰지정	법 제31조의 22	3년 일몰	개별 입법 계획에 의거	지능통신 정책과

◎전자서명법

규제명	개선방향	관련조문	재검토 일몰	완료 일정	담당과
공인인증기관의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지정시 지정이 제한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한사유를 제외하고는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하도록 넉거티브방식으로 규정을 개정	시행령 제43조의 3	3년 일몰	개별 입법 계획에 의거	정보보호 정책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규제명	개선방향	관련조문	재검토 일몰	완료 일정	담당과
전자문서증계자의 지정	재검토 일몰지정	시행규칙 제3조	3년 일몰	개별 입법 계획에 의거	정보화기획과
자료제출요구 및 시정명령 등	재검토 일몰지정	시행령 제68조	3년 일몰	개별 입법 계획에 의거	정보화기획과
과태료	재검토 일몰지정	시행령 제74조	3년 일몰	개별 입법 계획에 의거	정보화기획과
정보통신망의 표준화 및 인증	재검토 일몰지정	법 제8조	3년 일몰	개별 입법 계획에 의거	정보화기획과
정보통신망 제품 인증기관 지정	재검토 일몰지정	법 제9조	3년 일몰	개별 입법 계획에 의거	정보화기획과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 등록	재검토 일몰지정	시행령 제66조의 2	3년 일몰	개별 입법 계획에 의거	인터넷정책과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약관 신고	재검토 일몰지정	법 제56조	3년 일몰	개별 입법 계획에 의거	인터넷정책과
통신과금서비스 이용 제한	재검토 일몰지정	법 제61조	3년 일몰	개별 입법 계획에 의거	인터넷정책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 및 인증기관 지정	재검토 일몰지정	법 제47조	3년 일몰	개별 입법 계획에 의거	정보보호 정책과
정보통신망 인증 위반 제품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 등	재검토 일몰지정	법 제8조	3년 일몰	개별 입법 계획에 의거	정보보호 정책과

◎정보통신산업진흥법

규제명	개선방향	관련조문	재검토 일몰	완료 일정	담당과
지식정보보안 컨설팅 전문업체의 지정신청	재검토 일몰지정	시행규칙 제9조	3년 일몰	'13. 하반기	정보보호 정책과
지식정보보안 컨설팅 전문업체의 지정심사	재검토 일몰지정	시행규칙 제10조	3년 일몰	'13. 하반기	정보보호 정책과
지식정보보안 컨설팅 전문업체의 신고의무	재검토 일몰지정	시행규칙 제11조	3년 일몰	'13. 하반기	정보보호 정책과
지식정보보안 컨설팅 전문업체의 재지정	정보보안컨설팅 전문업체에 대한 재지정제도(유효기간 3년)를 폐지하고, 매년 사후관리 하는 방식으로 단일화	시행규칙 제12조	3년 일몰	'13.12 개정	정보보호 정책과
지식정보보안 컨설팅 전문업체의 지정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지정하도록 넉거티브 방식으로 규정	법 제33조	3년 일몰	개별 입법 계획에 의거	정보보호 정책과
지식정보보안 컨설팅 전문업체의 결격사유	재검토 일몰지정	시행규칙 제34조	3년 일몰	'13. 하반기	정보보호 정책과
지식정보보안 컨설팅 전문업체의 지정취소	재검토 일몰지정	시행규칙 제37조	3년 일몰	'13. 하반기	정보보호 정책과
지식정보보안 컨설팅 전문업체의 행정처분	재검토 일몰지정	시행규칙 제16조	3년 일몰	'13. 하반기	정보보호 정책과
지식정보보안 컨설팅 전문업체의 행정처분	재검토 일몰지정	시행규칙 제14조	3년 일몰	'13. 하반기	정보보호 정책과

◎전파법

규제명	개선방향	관련조문	재검토 일몰	완료 일정	담당과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의 지정	재검토 일몰지정	법 제58조의5	3년 일몰	개별 입법 계획에 의거	전파기반팀
무선종사자의 자격	재검토 일몰지정	법 제70조	3년 일몰	개별 입법 계획에 의거	전파기반팀
무선종사자의 배치	재검토 일몰지정	법 제71조	3년 일몰	개별 입법 계획에 의거	전파기반팀
전자파인체보호기준	재검토 일몰지정	법 제47조의2	3년 일몰	개별 입법 계획에 의거	전파기반팀
전자파적합성	재검토 일몰지정	법 제47조의3	3년 일몰	개별 입법 계획에 의거	전파기반팀
주파수할당	재검토 일몰지정	법 제10조	3년 일몰	개별 입법 계획에 의거	주파수정책과
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	재검토 일몰지정	법 제13조	3년 일몰	개별 입법 계획에 의거	주파수정책과
주파수이용권	재검토 일몰지정	법 제14조	3년 일몰	개별 입법 계획에 의거	주파수정책과
재할당	재검토 일몰지정	법 제16조	3년 일몰	개별 입법 계획에 의거	주파수정책과
신고를 통한 무선국 개설 등	재검토 일몰지정	법 제9조의2	3년 일몰	개별 입법 계획에 의거	전파기반팀
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	재검토 일몰지정	법 제20조	3년 일몰	개별 입법 계획에 의거	전파기반팀
무선국의 개설조건	재검토 일몰지정	법 제20조	3년 일몰	개별 입법 계획에 의거	전파기반팀
산업·과학·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	무선설비의 경우와 같이 전파응용설비에 대해서도 설비의 양도, 법인의 합병, 상속 등 승계사유 발생 시 시설자의 지위를 자동으로 승계하도록 규제완화	법 제58조		개별 입법 계획에 의거	전파기반팀
무선국 검사	전파기술발전, 전파이용 및 무선설비 확대 추세에 대응하여 무선국 검사 전수검사가 아닌 표본검사 제도 적용을 확대하도록 개선	법 제24조		개별 입법 계획에 의거	전파기반팀
지정시험기관의 검사	재검토 일몰지정	법 제58조의6	3년 일몰	개별 입법 계획에 의거	전파기반팀

◎우편법

규제명	개선방향	관련조문	재검토 일몰	완료 일정	담당과
서신송달업자의 신고	소규모 서신송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제를 폐지하여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서신송달업을 할 수 있도록 완화	법 제2조의2	3년 일몰	개별 입법 계획에 의거	우편정책과



행정규제란 무엇인가요?

행정규제는 사회 및 시장질서 확립, 국민안전 확보 등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령 등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은 출생부터 교육, 취업·창업, 사망까지 행정규제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규제개선, 왜 필요할까요?

행정규제는 뚜렷한 목적과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게 되나 사회적·정치적 환경변화에 따라 강화·유지·완화·폐지 등 지속적 관리와 합리화의 요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적 요구와 정책적 필요성을 모두 고려하여 행정규제를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3 규제개선,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정부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기반구축'이라는 국정 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13년 규제정비과제 (1월~)

정부 부처별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매년 초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하였고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손톱 밑 가시뽑기' (5월~)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영업 및 경영활동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작지만 실제로 기업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고질적인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신속하게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네거티브 방식 규제개선' (8월~)

정부는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투자활동을 촉진하고 기업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기업활동과 관련된 행정규제 전체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여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지된 것만 최소한으로 규제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

◎ 인터넷 규제개선 추진단(5월)

미래창조과학부는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에서 인터넷에 기반을 둔 각종 산업의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정비하여 인터넷 경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16인으로 구성된 '인터넷 규제개선 추진단'을 2013년 5월부터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소 : 경기도 관천시 관문로47, 4동

대표전화 : 02-2110-2951

◎ 과학기술 규제개선 추진위원회(9월)

미래창조과학부는 산·학·연 등 혁신주체의 과학기술 혁신활동을 촉진하거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과학기술 관련 제도개선을 위하여 2013년 9월에 과학기술 규제개선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소 : 경기도 관천시 관문로47, 4동

대표전화 : 02-2110-2522

◎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9월)

국무조정실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기업현장의 애로와 국민 불편 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듣고 개선하기 위하여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을 발족하였습니다.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회관 18층

대표전화 : 02-6050-3295



국민행복을 위한 규제개선, 언제나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개선 건의사항이나 불편한 사항은 어디에 말해야 하죠?

- ①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http://msip.go.kr>) : 참여 → 규제개선 건의
- ②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 (<http://rrc.go.kr>) : 참여마당 → 규제건의
- ③ 국민신문고 (<http://epeople.go.kr>)
- ④ 중소기업 옴부즈만 (<http://osmb.go.kr>) : 규제 애로 신고

정부에서 추진 중인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규제개혁위원회 (<http://rrc.go.kr>)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